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총괄)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1 2019년 주요 변경사항

업무명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장애인 등록 및 심사	-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시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시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고시 개정
	- 공단 심사 건 :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정 불가. 변경요청 공문 발송	- 공단 심사 건 : 등급결정일은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수정 가능. 그 외 항목에 대해서 변경요청 공문 발송	제도 개선
	○ 신장장애 재판정 시 최근 장애인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제출	○ 신장장애 재판정 시 기 제출한 장애인진단서 및 심사자료(투석·이식 기록) 직접확보 서비스 활용가능	제도 개선
장애이아 보육료 인상	지원단가 - 중일반 44만 9천원/월 - 방과후 : 22만 5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4만 9천원/월	지원단가 - 중일반 46만 2천원/월 - 방과후 : 23만 2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6만 2천원/월	단가 인상
장애인고용 서비스	의무고용사업주 정부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의무고용사업주 정부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제도 개선
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할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저가항공사(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추가	대상 확대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1 연금·수당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연금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2만원 부부가구 : 195.2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계</th> <th>기초</th> <th>부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초 (생계· 의료급여)</td> <td>18~64세</td> <td>330,000</td> <td>250,000</td> <td>80,000</td> </tr> <tr> <td>65세 이상</td> <td>330,000</td> <td></td> <td>330,000</td> </tr> <tr> <td rowspan="2">주거· 교육급여 차상위</td> <td>18~64세</td> <td>320,000</td> <td>250,000</td> <td>70,000</td> </tr> <tr> <td>65세 이상</td> <td>70,000</td> <td></td> <td>70,000</td> </tr> <tr> <td rowspan="2">차상위 초과</td> <td>18~64세</td> <td>270,000</td> <td>250,000</td> <td>20,000</td> </tr> <tr> <td>65세 이상</td> <td>40,000</td> <td></td> <td>40,000</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기초	부가	기초 (생계· 의료급여)	18~64세	330,000	250,000	80,000	65세 이상	330,000		330,00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320,000	25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70,000	250,0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읍·면·동에 신청
구 분		계	기초	부가																															
기초 (생계· 의료급여)	18~64세	330,000	250,000	80,000																															
	65세 이상	330,000		330,00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320,000	25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70,000	250,0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1-2.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 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 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 1인 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 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2 보육·교육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0세~만 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세~만 8세까지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 종일반 : 46만 2천원/월 - 방과후 : 23만 2천원/월 -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6만 2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u> - <u>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등</u> <u>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u> <u>연계</u> 	제공기관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3-2. 자동차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지역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 1~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관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4. 장애검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 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음·면·동에 신청
3-5. 발달재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u>기준 중위소득 180%</u> 이하 ● 기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음·면·동에 신청
3-6. 언어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u>기준 중위소득 120%</u>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음·면·동에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및 교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 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식 :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음·면·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8.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u> ● <u>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u> <p>* 세부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별표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차상위는 100%)</u> ● <u>의료급여 수급권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u> <p>*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p>	<p><신청기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p> <p>- 의료급여: 시·군·구청</p> <p>※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p>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등록장애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u>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u> 	<p>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p>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자</u> <p>*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p>읍·면·동에 신청</p>

4 서비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여: 등급별 월61.0~153.0만원 - 추가급여: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130~3,539천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기본급여(1~4등급): 36.6~113.5천원(국민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2.6~176.9천원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아동당 연 60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4-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기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읍·면·동에 신청
4-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1인: 150천원, 2인: 300천원, 3인 이상: 400천원 	공공후견법인에서 활동비 지급
4-5.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읍·면·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6.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 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최대지원 금액:240,000원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4-7.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료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2) 실비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군·구에 상담
4-8.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 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4-9.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0천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0.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중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p>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 (☎02-6900-83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p>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 (☎02-6900-8322)</p>
4-1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한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p>읍·면·동에 신청</p>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 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4-12.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13.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장애인(1급~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4급이하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p>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p>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4.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장애등급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급 - 5~6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5~6급: 면허증(면허시험 응시표)에 면허조건이 부과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보통 및 제 2종 보통면허(수동, 자동) 면허취득 및 소지자 교육 교육과정별 1회만 실시 ● 장애상태에 맞는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 운전면허소지자: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 - 운전체험 교육 및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 08:30~17:30, 공휴일 제외(토, 일, 국경일 등) 	<p>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 지원과 내방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 * 전화번호: 02-901- 1553</p>

5 일자리 용자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률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및 주요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h>근로 시간</th> <th>급여</th> </tr> </thead> <tbody> <tr> <td>복지일자리</td> <td>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td> <td>월 56시간</td> <td>월 보수 467천원/ 월 20천원</td> </tr> <tr> <td>일반형 (전일제) 일자리</td> <td>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td> <td>주5일 40시간</td> <td>월 보수 1,745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75천원</td> </tr> <tr> <td>일반형 (시간제) 일자리</td> <td>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td> <td>주 20시간</td> <td>월 보수 873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88천원</td> </tr> <tr> <td>시각장애인 안마사과견</td> <td>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td> <td>주5일 25시간</td> <td>월 보수 1,114천원 /월 운영비 118천원</td> </tr> <tr> <td>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td> <td>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td> <td>주5일 25시간</td> <td>월 보수 1,094천원/ 월 운영비 143천원</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 56시간	월 보수 467천원/ 월 20천원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745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75천원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 20시간	월 보수 873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88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과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114천원 /월 운영비 118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094천원/ 월 운영비 143천원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 56시간	월 보수 467천원/ 월 20천원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745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75천원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 20시간	월 보수 873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88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과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114천원 /월 운영비 118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094천원/ 월 운영비 143천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p>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p>
5-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p>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p>
5-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p>시·군·구에 상담</p>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최고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p>읍·면·동에 신청</p>

6 공공요금 관련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3.50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고공, 농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 장공공체육 시설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요금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19.00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18.67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3.50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28.00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진지사, KBS수신료콜센 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 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8.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1588-2001) ● 아시아나 항공(1~6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 에어부산(1~4급), 국내선 요금 3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66-3060) ● 이스타항공(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44-0080) ● 제주항공(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99-1500) ● 진에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00-6200) ● 티웨이항공(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88-8686) <p>※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p> <p>※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p>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 복지 카드' 신청 개시('14.12月부터) 	<p>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p> <p>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p>
6-11. 전기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1급~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요금 정액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p>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p>
6-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1급~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 www.citygas.or.kr 	<p>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p>
6-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p>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p> <p>www.ts2020.kr</p>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7 세제혜택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중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중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등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7-5. 소득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 상담12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p>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p>
7-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7-8. 장애인 보험료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7-9. 상속세 상속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 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p>관할 세무서에 신청</p>
7-1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 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 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p>관할 세무서에 신청</p>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1.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휠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 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p>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p>
7-1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p>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p>
7-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p>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p>

8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 주간 보호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8-2.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및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 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8-6.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
8-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8. 장애인 생활이동지 원센터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지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 이용요금 : 실비 ●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8-9.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수화통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신청 문의: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8-10. 장애인 재활지원센 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02-3472-3556 www.free get.net
8-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문의: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www.kaidd.or.kr
8-12. 편의시설 설치시민 추진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위탁 단체(<u>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도 협회 및 시·군·구지회</u>) ● 시·도(시·군·구),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도지사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3.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799- 1021)
8-14.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시· 군·구 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02-2289- 4343)
8-15. 청각장애아 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